

	선행학습경험인정규정	규정번호	3-4-28
		제정일자	2023.09.01.
		개정일자	2025.05.01.
		개정차수	2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4조의2에 의거 본교에서의 선행학습경험 학점인정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행학습경험(이하 “학습경험”이라 한다)이란 학칙 제44조에 명시된 학점인정 모든 조항을 통해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2. 선행학습경험인정(이하 “학습경험인정”이라 한다)이란 다양한 형태의 선행학습경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평가하고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련성 및 기준) ① 학습경험은 교과별 교과목 목표 및 내용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 훈련, 경험 등을 포함한다.

②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 부합되는 학습경험(관련 교육 및 학습, 훈련, 경험 등)이어야 한다.

제4조(학과학점인정평가위원회) ①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를 수행할 학과학점인정평가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학과위원회의 구성은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과 전임교원과 전공관련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학습경험 학점인정 신청 내용 평가
2. 기타 선행학습 학점인정 신청 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학습경험인정 절차) ① 학습경험인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② 신청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③ 학과위원회에서는 신청 학생의 학습경험인정을 평가한다.
- ④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학과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 ⑤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해당 학과로 통보한다.
- ⑥ 학과에서 이상이 없을 시 정리하여 교무처에서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⑦ 학생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통보한다.

제6조(학습경험인정 신청) ① 학습경험인정은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습경험인정은 교과목 수강 외에 객관적 확인과 증빙이 가능한 학습경험, 자격취득, 직업경험 등 새롭게 취득한 경험과 학습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 ③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입(편입)학 허가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 3주 이내에 확정한다.
- ④ 학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점인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위원회가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한 자

제7조(학습경험인정 범위) ① 학습경험인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② 동일한 학습경험, 자격취득, 직무경험 등에 대하여 중복인정 하지 않는다.

- ③ 학습경험인정은 본 대학교가 개설 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습경험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4.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⑤ 제3항 1호 내지 2호에 따른 학습경험 중 석사학위 교육과정 이상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습경험 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학습경험 학점인정 시 국가공인자격증과 관련된 교과목의 경우는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증 발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여부를 학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⑦ 제4항 4호에서의 산업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
 -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등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6.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7.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학습경험인정 평가의 실시) ① 학과위원회는 학점인정 평가 시 신청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해당 교과목의 학점만 인정한다.

- ② 학과위원회는 제출서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과위원회는 신청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확정 한다.
- ④ 학과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재평가를 신청 할 수 있다.
- ⑤ 학과위원회는 재평가 신청을 받을 경우 1차 평가 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학습경험인정 신청자의 수업참여) 학습경험인정 신청자는 학습경험인정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과목 수업 및 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 및 평가 미참여 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

제10조(기타) 기타 학습경험 인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